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운 영 위 원 회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운영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 각종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 하고자함.

2. 감사기간

-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1일간)

3. 감사실시대상및 사무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위원회조례제3조2항1호
 - 구의회 사무국
- 사무의범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위원회조례제3조2항1호
 - 구의회 사무국업무 전반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운영위원회 위원장

(동별순)

위원장	간 사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박정자	박양하	김영진,김성렬,고기판,신길철, 오인영,박승석,고현순,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 일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 고
2002.12.4(수)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현황보고및청취 -서류확인 -개별감사

6. 감사방법

- 현황보고 및 청취 - 사무국장 보고
- 보충자료 제출요구
-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답변

7. 감사 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적극적인 감사당부 및 성실한 수감자세 강조
- 선 서
- 국장인사
- 현황보고 - 감사대상사무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 개별감사
- 공개질문답변 - 일문일답식 회의진행
- 감사결과 종합평가 및 강평

8. 감사 자료요구 사항

○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 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통사항

-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 2002년도 주요 업무 보고서
-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2001.7.1-2002.10.31)
-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2001.7.1-2002.10.31)
- 각종 민원(진정·청원·기타)접수처리부(2001.7.1-2002.10.31)
- 기타 위원이 감사시 요구하는 자료

나. 의원별 감사요구자료 목록 -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부서명	요 구 자 료 명	비 고

-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는 2001. 7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
- 제출기한 : 서류제출 일로부터 3일
- 제출부수 : 15부
 - 모든자료는 관리번호를 명기하여 제출

9.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및 보고

가. 감사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위원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상정의결

10. 주요 감사작안 사항

대 상	주 요 감 사 작 안 사 항	비 고
구 의 회 사 무.국	· 의회의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의회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에 관한사항 · 회의의 방청 및 참관 · 의회 청사 시설 장비관리 · 물품의 수급관리 · 청원의접수,이송 및 처리 결과 통지	현황보고청취 질문및답변 서류감사

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사전에 적정 예산을 배정하여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수 있도록 강구.

나. 의원 국내여비 지급에 대하여

- 의원 비교시찰 및 위탁교육등으로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강구 할것

다. 의원 상해 부담금 적정집행

-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의원 상해 부담금이 기준에 적정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강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 정 위 원 회

200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되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운동을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2.11. 28 (목) ~ 12.4 (수) 7일간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2호
- 행정위원회 소관 전부서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자치구사무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행정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 사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손영상	김성렬	강두석, 고현순, 노동우, 류병하 박승석, 배기한, 신길철, 조길형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일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 고
2002.11.28. (목)	영등포구청 제 1 감사장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2002.11.29. (금)		행정관리국 재 무 국	
2002.11.30. (토)		재 무 국 보 건 소	
2002.12.01. (일)			
2002.12.02 (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보건소	- 종합평가 - 강평
2002.12.03. (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보건소	
2002.12.04. (수)		공개질의답변	

※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주요감사사항

대 상	주요 감사사항	비 고
감사담당관	· 구자체 감사와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요구와 소청사항 처리 ·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비위통보사항 조사처리 총괄 · 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종합분석 · 환경순찰 관련사항처리 · 진정의 접수처리 및 총괄관리 ·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실태 · 집단민원 및 미해결 민원총괄관리 · 각종 감사실시 및 수감처리결과 · 재난예방 안전관련 및 시설물 안전지도 점검 · 재난대비교육·훈련 및 홍보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 감사 현지 확인
행정관리국 (총무과)	· 구·동의 행정구역, 통반조직 및 운영 · 취학 기타학무 · 주민등록 및 인감 · 공무국외여행관련업무 ·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 구민회관 운영관리 · 인력 및 조직관리에 관한사항 · 반사회 운영실태 (건의사항처리) · 시범동 운영추진사항(동기능전환업무 추진사항) · 새마을문고 운영지도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구민상 및 각종 표창 후보선정 관련사항 · 공공청사 및 차량등 주요장비 관리총괄 · 전시 민방위 및 전시운영체계 · 민방위운영 및 인력동원 총괄 · 민방위시설물 현황 및 유지관리	

대 상	주요감사와안사항	비 고
(기획예산과)	· 규제개혁 및 공무원 제안제도 주민창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 총괄 · 예산의 집행계획 및 집행관리 · 지방채 및 기금운용관리 · 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의회 접수민원에 관한 처리사항 지원 및 협조 · 행정심판, 소송업무의 총괄관리 및 조치사항 · 주요사업의 심사분석 및 투자심사 · 전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 감사 현지 확인
(민원봉사과)	· 행정정보공개에 관한사항 · 진정서등 각종 민원서류 접수 · 각종 인·허가증 교부 · FAX 민원처리 · 호적 전산화 추진현황 · 보조문서 관리실태 · 공공요금(우편료)집행현황	
(문화체육과)	· 신문구독료의 적정집행사항 · 각종 홍보물 발간업무 · 출판, 인쇄업등록 및 발간업무 ·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감상실)지도·감독 · 민간단체의 해외 교류사업 지원 · 국내외 도시 및 단체간 교류에 관한 사항 (중국, 일본, 고성군, 청양군, 영암군) · 구민 체육대회등 체육행사(대회)에 관한사항 ·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된 사항 · 영등포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대 상	주요감사확인사항	비고
보 건 소 (보건위생과)	· 민원실 운영,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및 점검 ·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각종 신고사항 처리 · 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보건기획 및 물품장비관리 ·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처리 · 무허가 식품 위생업소 감시 · 이 · 미용사 지도단속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 감사 현 지 확인
(보건지도과)	· 보건교육 및 모자보건사업 · 성교육 및 가족계획사업 · 각종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 순회진료 및 방문진료사업 · 에이즈 예방사업 · 각종 신고사항 처리 · 방역대책수립 및 방역약품관리실태	
(의 약 과)	· 마약법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사업 · 약사법(약국) 관련 지도단속 및 사후관리 · 각종검사 및 건강증진센터 운영 · 의료법(병·의원)에 관한 사무 · 의료업소(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지도점검 사항 · 보건소용 의약품 구매 및 관리현황	
(동사무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조사책정 및 변경신고 · 대여양곡 상환금 체납자 관리 · 민방위 업무 · 주민복지센터 전환 후 문제점 ·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주민등록 전산관리 및 화상작업 현황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상정의결

8. 시정 및 지적사항 : 별 점

폐기물용역처리 경위서

☐ 대지위치 : 영등포구 신길동423-3외 3필지

☐ 사업명 :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 내용 :

- 2002. 1. 14 지하충굴착을 위한 토목 가시설 공사중 신축위치부분에 예상치 못한 폐기물이 발견되어 시험터파기한 결과 약 5,000m³이상으로 예상되는 대량의 폐기물이 확인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검토한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의한 폐기물처리 분리발주시 입찰공고기간, 적격심사기간, 계약기간등의 절차등을 거칠경우 약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어 전체공사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었고,
- 또한 신축공사와 분리하여 폐기물처리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발주에 필요한 별도의 소요예산이 확보(약 2억원이상)되어 있어야 하나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추가 예산확보할 경우 2002년 추경 또는 2003년 본예산에 확보가 가능한 시점이므로 본공사를 중단하고 예산확보후 폐기물처리용역 발주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 용역처리에 유리한 현도급자에게 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처리토록 하고, 현장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반출물량에 대하여 낙찰율을 적용 설계변경 정산 조치토록 처리하였습니다.
- 본사업 부지상의 기존건물 철거잔재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시 폐기물처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공사와 분리 폐기물을 처리 하였으나, 공사착공시 발견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당시 상황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기 경위서를 제출 하오니 이해와 선처를 바랍니다.

2002. 12. .

제출자 : 소속 건축과 직급 건축6급 한봉구

소속 건축과 직급 건축7급 이진원



경 위 서

□ 제 목 :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폐기물처리시 현장확인 소홀

□ 내 용

- 2001. 10. 22일 착공한 영등포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시행기간중 굴토공사를 위한 시험터파기 실시결과 예기치 못한 다량의 혼합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당시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인하여 도급자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토록 하였으며 일반토사로 반출이 불가함에 따라 폐기물로 처리하고자 시공사에서 관련 폐기물 처리업체의 견적서 등을 대비하여 견적가 최저업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경기도 파주소재 (주)대길환경으로 결정 하였음.
- 2002. 2. 22일 책임감리자로부터 제출된 매립 폐기물 처리단가 및 하도업체 승인 내용을 검토한바, 처리업체 결정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적정 여부 및 처리장소 등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2. 3. 15일부터 동년 3. 30일 까지 폐기물을 반출 하였음.
- 당현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현장으로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는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반출물량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후 정산 조치토록 하였으며, 현장감리자가 확인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있음.
-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하여 업무 담당자로서 폐기물 처리장소 등을 확인 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폐기물 처리 현장확인을 소홀히한 사실이 있음.

2002. 12. .

제출자 : 소속 건축과 직급 건축7급 성명 이진원

소속 건축과 직급 건축6급 성명 한봉구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2002. 11. 29 (금)

감사위원 : 손 영상 위원 (인)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보건위생과	제목 : ○ 시,구에서 식품진흥기금 용자 대상은 별도 규정 없이 구청에 영업 신고자는 용자 제외 업소의 누구나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요식업 협회 기금으로 용자대출하는 것처럼 요식업협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던 민원에게 행정처분장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여야 하나 직접 송달치 않고 한국음식업 협회 영등포구지회 직원 최상규 민간인에게 2002.2.24일경 상호 엠티 영업주 박수금에 송달토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 시,구에서 식품진흥기금 용자는 음식업 영업 신고자는 용자제외 업소의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은 요식업 관련자를 전원 교체시키고 음식문화 개선에 전문 식견이 있는 위원이 선임 되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58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송달치 않고 민간인이 송달토록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은 취소 처분 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고 앞으로는 한국요식업협회에 권한을 제한 하여야 한다. ※ 감사 부서에서 위법 여부를 적의 조치하고 결과보고 하기 바람 - 별첨 : 확인서 첨부	

확 인 서

현 부 서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전 부 서 : 영등포구청 보건위생과
 직·성명 : 지방행정주사보 김찬식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소출한 점이 다음과 같이 있기에 확인합니다.

가. 업 소 현 황

신고번호	상호명	영업주	행정처분경위	비 고
4640	엠티	박수금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기간 (2002.2.25~2002.5.24)

상기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제6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 통보한후 그 결과에 대하여 사실이 인정이 되어 식품위생법 제58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던 바, 행정처분장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송달하여야 하나 과도한 업무폭주로 직접 송달치 못하고 한국음식업중앙회 영등포지회 직원(최상규 과장)으로 하여금 2002.02.24일경 송달토록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소속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직급 :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 김찬식 

확인자 소속 : 영등포구청 보건위생과
 직급 :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 송성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2002. 11. 29 (금)

감사위원 : 박 승 석 위원 (인)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보건지도과	제목 : 독감 예방 접종 1. 독감 예방접종시 각 동별 접종자가 특정동 (보건소 인접동)에 치우쳐 각 동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2. 예방접종 예진표에 주소지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 각종 홍보물 (ex : 프랑카드, 동별 안내방송등) 및 반상회 회보지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2. 예방접종 예진표의 주소란을 정확히 기재할 것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2002. 11. 29 (금)

감사위원 : 박 승 석

위원 (인)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재 무 과	제목 : 화재보험 누락 - 각종 청사, 위탁시설 (노인정동) 및 50만원 이상 재산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을 즉시 가입 하여야 하나 구립 신길2동 방학 경로당의 여러건의 보험 누락이 발견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 화재보험료 대상인 신축 건물등 미가입 분은 즉시 가입토록 시정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2002. 11. 29 (금)

감사위원 : 박 승 석 위원 (인)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총 무 과	제목 : 관용 차량 보험가입 - 현 손해보험사의 보험자율화로 우리구에서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시행치 않아 예산 낭비 요인발생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 차량 보험료 가입시 여러곳의 보험사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할것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2002. 12. 2 (월)

감사위원 : 노동우 위원 (인)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보건소	제목 : 의료기관 지도점검표 작성 소를 ○ 영등포구 대림1동 751-3호 남서울의원 외 29개 의료기관 지도 점검시 점검을 미흡(점검 사항 일부 누락)하게 한 사실이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의료기관 지도점검표 작성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2002. 12. 2 (월)

감사위원 : 신길철 위원 (인)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전부서 보건소 총무과	제목 : 보건소 지도단속 실적저조외3건 ○ 각종 우편물 반송건수가 많이 발생 예산낭비 ○ 보건소 지도 단속 실적 저조 ○ 부적절한 인사로 행정공백 초래 ○ 공무원 패용 명찰에 해당과명 표기, 동사무소 행정차량에도 명칭 표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 우편물 발송시 정확한 소재지를 파악하여 우편물 반송이 최소화 하도록 할 것 ○ 병원·약국등 수시로 지도 단속 요망 ○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결원시 즉시 인사 원칙에 의거 행정공백 최소화 할 것 ○ 공무원 패용 명찰에 해당과명 표기, 동사무소 행정차량에도 명칭 표기 할것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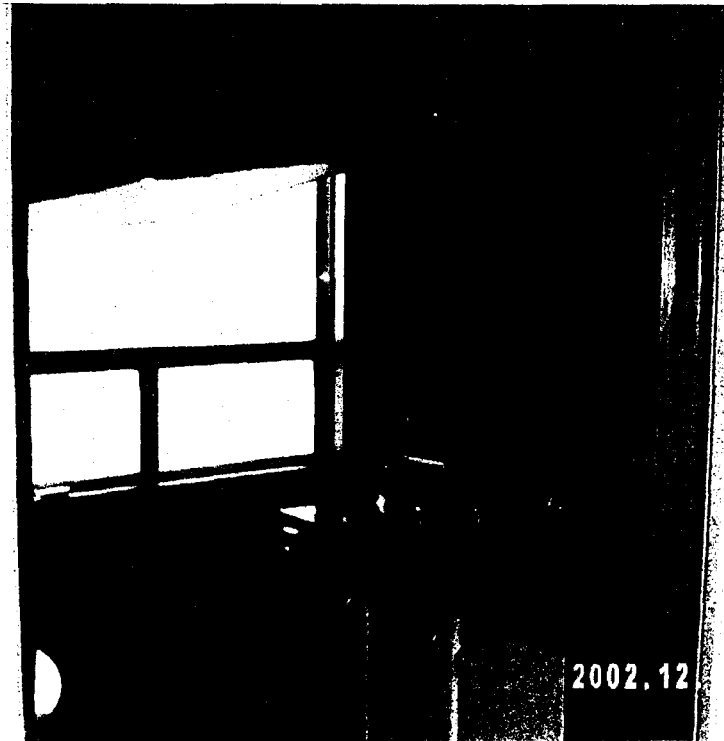
2002. 12. 3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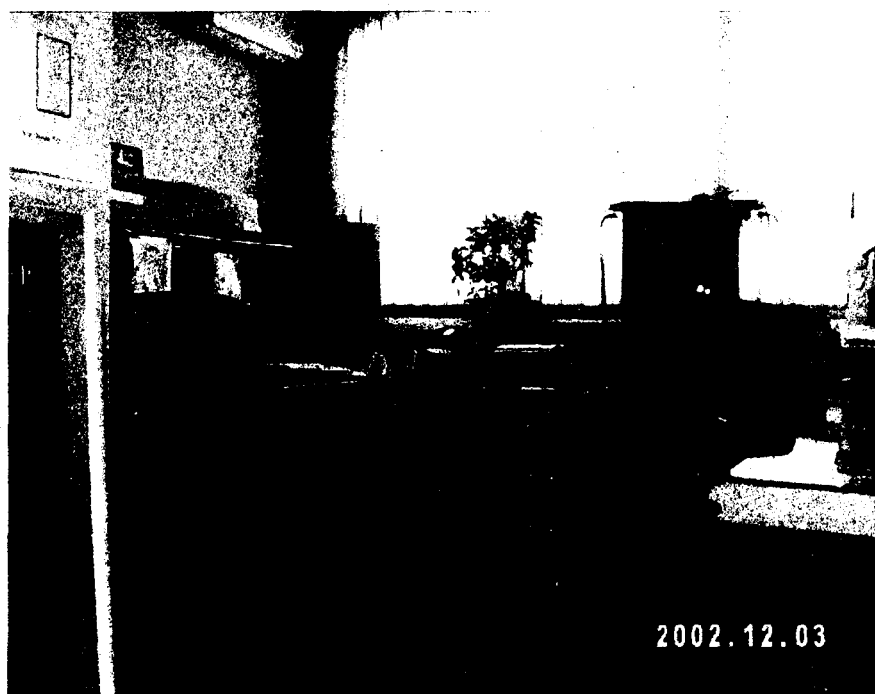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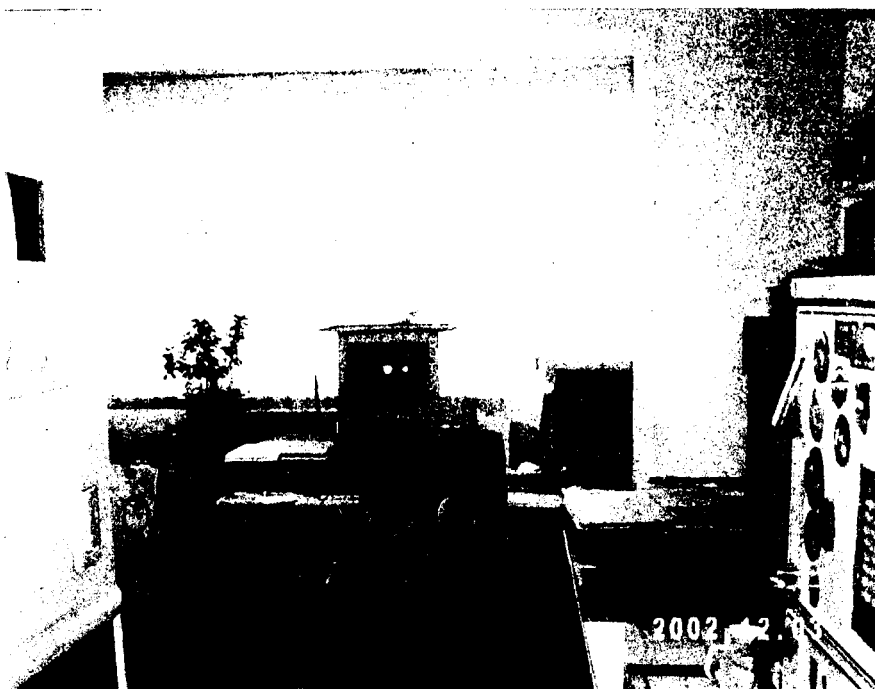
감사위원 : 김성렬

위원 (인)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제목 : 위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부적절 - 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 567-7 (김봉수.하연희) - 내용 : 2001.1.28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기숙사 용도의 상가 지상2~10층(연면적: 2,129.04㎡)을 임대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여 총87실중 63실을 임대주택으로 사용 하여 건축법 제14조 (용도변경)을 위반 - 조치내용 : 건축58550-3695(2001.8.14) 도시관리과에 이행강제금 부과 의뢰 (금액 : 55,485,640원) - 시정내용 : 건축58550-4722(2001.9.23) 시정완료후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2002.12.3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한 바 미시정부분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조치요당 별첨 : 관련서류 사본 1부	

영등포동 567-7호 건물 내부 전경





영등포구청
 영등포구 당진동 3가 385-1 / 전화 (02) 670-3390 / 전승 670-3383
 영등포구청장/건축관리담당주사: 서부영/담당자: 전 건축과장 ydo15@wtmail.yongdong.go.kr

문서번호 건축 58550- 4445

시행일자 2001. 9. 18.

수신 서초구 서초동 1629-15호

김봉현, 하연희 귀하

보존기간	년	구 청 장
공개여부	공개	이영민
부 구 청 장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전 결	
기 안	장 광 군	건축관리담당주사 서부영 협조
심사자	서부영	심사일자 2001. 9. 18

★◎

제목 위반사항 시정완료보고에 대한 보완 지시

1. 먼저 우리구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우리구 영등포동 567-7호 지상 건축물의 아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완료보고서가 제출되어 현장확인한 바, 2,3,4층 발코니(24개소)와 거실사이의 구획부분이 합판으로 되어있어 재시공 토록 2001.9.30일한 보완지시 하오니 보완사항을 완료후 증빙자료(시공전,중,후 사진등)를 우리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상기 기한까지 보완사항 미제출시에는 부득이하게 관련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10,497,600원) 부과 등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리니, 보완사항이 시정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위반사항 :

- ① 발코니를 거실로 무단 증평 시공 [(3.6×1.5)×48개소=259.2㎡]
- ②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무단변경하여 총 63실을 임대주택으로 사용중임.

보완사항

- ① 2,3,4층 발코니(24개소)와 거실사이의 구획부분을 단열시공 및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시공할 것

영 등 포 구 청 장

산출 조서

영등포구 영등포동 567-7 (공시지가:798,000원)			
위 반 사 항	위 반 내 용	① 2,3,4층 발코니 (24개소)와 거실사이 구획부분 부적정	적용법 적용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제59조
시정지시일자		2001년 7월 9일	위 반 면 적 129.60m'
가 격 산 출 지 수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지 붕
	용 도	기숙사	건 립 년 도 2000년도

이 강 제 금 출 산	행 금 출	162,000	×	①129.60㎡	×	50/100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위 반 면 적 또는 연면적		산 정 율	
				=	10,497,600원		
		감면율		이 행 강 제 금			

상기와 같이 산출 조정 하고자 합니다.

조 사 일 자 : 2001. 9.

조사자 직명 : 지방건축서기보

성 명 : 장 광 균

담 당	건축과장
장 광 균	이 m
협 조	건축관리담당주사 A 5 5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축척: 1/1200 도호: 2 호 []					1일
신청인	성명	주소			
대상지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67- 7		
확 인 내 용	1	국토이용	용도지역	도시지역	
			용도지구	[해당없음]	
			개발계획 등의 수립여부	[해당없음]	
	2	도시계획	지역	일반주거지역	
			지구	[해당없음]	
			구역	[해당없음]	
			지구단위 계획구역	[해당없음]	
			도시계획시설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3	군사시설	[해당없음]		
	4	농지	[해당없음]		
	5	산림	[해당없음]		
	6	자연공원	[해당없음]		
	7	수도	[해당없음]		
8	하천	[해당없음]			
9	문화재	[해당없음]			
10	전원개발	[해당없음]			
11	토지거래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직원업무참고용		
귀하의 신청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02 년 1 월 30 일					수수료 1천원
영 등 포 구 청 장 인 (별첨 14-5)					

위법 건축물 현황

연번	사용승인 일(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주소 성 명	감리자 및 주소	지 적 사 항	비 고
1	2000.11.28 (비-39)	영등포동567-7	서초구 서초동 1629-15 김봉수, 하연희	송파구 방이동22-3 한국투자신탁 3층 진양U&E건축 강택구	· 발코니를 거실로 무단 증평 시공 [(3.6×1.5)× 48EA = 259.2m ²] ·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무단변경하여 총 63실을 임대주택으로 사용중임	· 건축주 고발 · 감리자 기처분 (‘01. 7.9) ₩ 1.48.48.64.00
2	2000.5.3 (비-13)	영등포동4가 90와 5필지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93 (주)충무병원	영등포구당산동3가 454 한전건축 김수학	· 무허가 건축물 존치 - 북측 창고(면적:약25m ²) 및 D동 현관부분 (면적:약 2.9m ²) · 남측 대문 및 담장설치로 주차3대 진출입 불가 · 법정조경 약199m ² 미식재됨	· 건축주 고발 · 감리자 기처분 (‘01. 7.9) ₩ 1.38.04.00
3	2001.3.29 (비-9)	당산동121-162	당산동121-221 박종상	영등포구 당산동 2가72 양일빌딩 401호 두리건축 표윤영	· 법정조경 14m ² 미식재 · 지상 5~7층 6개실 앞에 설치된 발코니부분 출입 구 설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위배 · 옥상 물탱크실 거실로 시공 · 지하 주차진입 경사로 구매(17.18%)로 법정기준 0.18% 초과 시공	· 건축주 고발 · 감리자 기처분 (‘01. 7.9) ₩ 2.74.00.00
4	2000.7.6 (비허-24)	대림동 878-17 외 2	모경환	영등포구 한전건축 김수학	· 지상4,5층 주택 사전입주	· 동담당 별도 조치중 -고발(‘01.4.16) 및 감리자 기처분 (‘01.7.9)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2002. 12. 3 (화)

감사위원 : 손영상

위원 (인)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제목 : 안경업소 지도점검 건 2002. 6.11~2002.11.30 까지 관내 90개 안경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사등종사자에 대한법률 제15조의 관련규정상 전혀 위반사항이 없다고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출장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지도점검을 확인한 것처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관내 안경업소에 대한 개설자 및 무자격 종사자가 직접 안경을 제조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구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경업소에 무자격 종사자 미신고등을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은 감사부서에서 위법여부를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확인서1부 첨부	

확 인 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안경업소에 대한 업무상황·시설 등을 지도점검
함에 있어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일부 업소에 대해 유
선으로 확인하는 등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 12.

작성자 소 속 : 영등포구 보건소 의약과

직·성명 : 지방행정주사보 이평수

직·성명 : 지방보건서기 채미

직·성명 : 지방보건서기 이은



확인자 소 속 : 영등포구 보건소 의약과

직·성명 : 의약과장 엄혜숙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2002. 12

사 회 건 설 위 원 회

200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사회건설위원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2. 11. 28(목) ~ 12. 4(수) [7일간]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3호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사무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사	감사위원	사무보조
박남오	고기판	김동철, 김영진, 김용수, 박양하, 박정자, 오인영, 이만식, 이용주.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 일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 고
2002. 11. 28 (목)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	생활복지국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2002. 11. 29 (금)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2002. 11. 30 (토)		도시관리국	
2002. 12. 1 (일)		공 유 일	
2002. 12. 2 (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 종합평가 - 강평
2002. 12. 3 (화)		건설교통국	
2002. 12. 4 (수)		공개질의답변	

※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 상정의결

7. 시정 및 지적사항 : 별첨

8. 주요 감사 사항

대 상	주요 감사 사항	비 고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책정 및 관리업무 · 노인복지 관련시설 설립 및 건립 · 경로 우대중·노인 교통수당에 관련된 업무 · 청소년 및 아동시설 복지사업(구립어린이집·구립독서실 포함) ·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호국보훈단체 지원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 가스 안전관리 및 수급조절에 대한 종합계획 · 구인·구직 수요조사 및 취업알선 · 공공근로사업의 기획·조정 및 운영	· 현황보고청취
(환경관리과)	·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환경유발부담금 포함)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생활공해(소음·진동, 분진, 악취 등)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 지정폐기물(병·의원 포함) 관리 · 저수조 청소 신고업체 및 대상건물 관리	· 질의 및 답변 · 서류감사 · 현지확인
(청소행정과)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과징에 관한 사항 ·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조정, 납부에 관한 사항 · 청소 관련 세외수입의 현제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재활용 이행 등의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공중 및 유료화장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차량 배치, 장비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 쓰레기 적환장 관리 · 환경미화원 관리	

대 상	주요 업무	비 고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	·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계획 및 정비업무 · 상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전·월세 용자금 지원 및 관리 · 과태료 부과징수 등 ·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과태료(이행강제금)부과징수 ·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 ·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련 사항 ·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	
(건축과)	· 건축허가 취소 및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고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구동청사, 복지시설 등의 설계 및 시공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 · 일반지역 구역내 위험건물 및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조합 설립(변경, 해산)인가 ·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	· 현황보고청취 · 질의 및 답변 · 서류감사 · 현지확인
(지 적 과)	·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 조사처리 · 택지소유 초과부담금 부과 ·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선정 ·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공원녹지과)	· 근린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공원내 공중화장실 실태) · 가로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 거리 환경미화 및 노변 꽃심기 · 체육관련시설(운동장 및 체육센터 등)설치 및 유지관리 · 체육시설의 신고·등록 및 지도 감독 ·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구분	주요 업무	비고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의 점용료 부과징수 · 도로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점용허가 및 이에 관련된 사항 · 지하매설물 관리 · 도로점용료(공간) 및 부당이득금 조정징수 · 도로 일시 사용허가 및 관리 · 가판점 등 가로시설물 유지관리	
(토목과)	·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굴착복구공사 ·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 ·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 보상관련 예산편성 및 지출등 보상업무 총괄	
(치수과)	·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 · 빗물펌프장·수문 기전설비 안전점검 계획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 및 원상복구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 준설업무 관련 사항 · 재난관리계획 총괄조정 · 재난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정보전달, 공조체계 구축	· 현황보고청취 · 질의 및 답변 · 서류감사 · 현지확인
(교통행정과)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기업체 교통수요관리) · 마을버스(한정면허)에 관한 사항 · 자전거 이용 증진 ·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 주택가공영노외주차장(주택가공동주차장)부지매입 및 주차시설 설치·유지관리 ·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업무	
(교통지도과)	· 주차장 특별회계관리 · 주차단속원 지도감독(공익요원 포함)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에 관한 사항 · 정비업체 지도단속 · 주택가공영노외주차장(주택가공동주차장) 운영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건설관리과	제목 : 점용료 재부과 및 이동화장실 철거 영등포1동 631-13 건물신축 현장에 허가된 폭1m를 초과하여 인도전체를 점용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허가면적의 약2배 정도를 점용하고 인도 위에 이동화장실을 방치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허가된 폭1m를 준수토록 지도, 단속실시 및 초과된 점용면적에 대하여 점용료를 재부과하고 이동화장실은 철거할 것.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건설관리과	제목 : 인도상에 점용면적 과다로 통행 불편 문래동5가 23-4 인도상에 점용허가를 받은 후 실제 점용하여 사용하는 폭은 허가된 1m를 초과하여 인도를 점용함으로써 주민의 통행이 불편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점용허가된 면적을 준수하여 통행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사회복지과	제목 : 지역봉사활동 지원금 지급 건 지역봉사활동 지원금이 봉사일지 확인도 없이 지급되었으며 일부지역(문래2동), 일부 인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역봉사활동 지원금 지급시 봉사일지의 확인과 각동별로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것.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황	비 고
환경관리과	제목 : 현장점검표 작성 부적정 유독물을 취급하는 영업장에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여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제3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검표가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위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담당공무원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교통행정과	제목 :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부적정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이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소화전 주변이나 소방차 통행이 불편한 6m이내의 도로 그리고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교차로 가각부분에 위치하는 곳이 다수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장 확인하여 조속히 시정할 것.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건 축 과	제목 : 불법도로점용 관리감독 소홀 구청으로 업무이관후 직원들의 현장점검이 없는 관계로 불법적이 도로점용과 허가기간을 위반하여 계속해서 점용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조치가 없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불법적인 도로점용과 허가기간 이후 계속해서 점용하는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사회복지과 총 무 과	제목 : 독서실관련 소관부서의 단일화 추진 독서실을 위탁 운영하는 마을문고의 소관부서는 총무과이고 독서실 관련 소관부서는 사회복지과로 유사한 업무를 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업무의 효율성과 인력 절감을 위하여 2개 부서에서 1개 부서로 소관부서의 단일화 추진.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청소행정과	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를 2001년 9월부터 5대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가 없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감시카메라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주민홍보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총 무 과	제목 : 동사무소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2000.1.10 조례 제461호)에 의거 각 동별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미통합 운영되는 동이 있는 등 운영실태가 미흡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미통합된 동은 조속히 통합방위협의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치 수 과	제목 : 지하수(음용수) 관리상태 건 지하수(음용수)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당산2동 122번지 (허가번호 01192006, 개발일 2002.7.9, 수질검사 2002.6.8)의 지하수는 관정 열쇠관리 부실등 관계공무원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사료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미흡한 부분을 즉시 시정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토록 하고 향후 유사시를 대비하여 관내 지하수(음용수)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치 수 과	제목 : 상하수도 공사장 민원발생 건 영등포6,7가 지역 상하수도 공사시 관리소홀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공사자재 방치, 흙먼지 발생 등으로 보행자 불편과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각종 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순찰활동이 실시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제목 : 거주자우선주차선 일부 변경 요청 건 영등포7가 5,6번지(영등포 중앙시장 5거리)에 불법주차 관계로 교통소통과 관련하여 주민불편에 따른 민원사항이 폭주되어 관련 부서에서 위 지역을 정비한 후 거주자우선주차선 8면을 설치하여 2002. 11. 15부터 관리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관련 부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삭제한 후 노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민간 위탁운용함으로써 인력을 절감하고 또한, 주변 지역의 교통소통이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사료됨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	제목 : 동 기능전환에 따른 순찰기능 활성화(강화)를 위한 동장 임무조정 건 각 동장은 관할 지역을 주1~2회 순찰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함이 요구되나,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구청으로 순찰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동에서는 민원처리 감시, 감독만 하는 실정으로 갈수록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보다 적극적인 사고로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순찰 업무를 활성화(강화)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건설관리과	제목 : 거주자우선주차선 구역 및 인도상 불법적치물 처리에 관한 건 영등포동 7가 155번지 주변(일명 소방도로) 중마루길 거주자우선주차선 구역 및 인도상의 불법적치물을 2002년 9월 시정조치 요구와 건설관리과 직원의 현장 확인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있음. - 불법적치물 방치업체(10개소) 일양냉동사업, 제일냉동설비주방, 뉴동성냉동주방, 아세아천막, 유림천막, 대경천막, 영진기업사, 우주주방, 정훈유통, 서경설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고발, 과태료 부과 등)를 하고 향후 재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공원녹지과	제목 : 녹지·공원시설 확충 건 - 우리구는 수도 서울의 서남부 중심지로 많은 통과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하지만 대기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자연조건이 열악하여 녹지·공원 등의 시설확충이 절실함에도 - 공원확보율이 서울시 평균의 1/10, 법정 기준의 1/4에 불과한 실정이며 관내 공원은 불과 29개소로 향후 4년간 가로수 식재대상 또한 457개 정도로 취약한 실정이나 예산부족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 유일하게 산이 없는 우리구는 대기오염에 대한 자연정화 능력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면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 하고 - 또한 구청, 구의회, 시의원이 협력하여 서울시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구됨.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황	비 고
건설관리과	제목 : 도로상의 차량통제 박스 설치 건 영등포동에 소재한 대우아파트 15m 중앙통로에 차량통제 박스가 설치되어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통행하는 차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철거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교통지도과	제목 :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방치된 자동차형 포장마차 불법주차 건 대방천 복개도로의 거주자 우선주차면(03-13-23, 03-13-24)에 자동차형 포장마차가 방치된 상태로 불법주차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불법주차된 방치차량으로 인하여 거주자 우선주차면에 다른 차량을 배정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견인조치 할 것.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사회복지과	제목 : 침수주택 수리비 지급 건 200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주택 158세대에 대하여 서울시 사회65240-1645(2002.8.12)호 침수주택 수리비 배정 및 서울시 치수58700-1807(2002.8.10)호 침수피해주택 시비지원 기준 공문에 의거 세대당 150만원(특별위로금 60만원, 주택수리비 90만원)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수령한 세입자가 주택수리비 90만원으로 주택은 수리하지 않고 이사를 계획하는 경우에 건물주와 세입자간 민원(마찰)이 발생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향후에는 지급 금액중 주택수리비 90만원에 대하여는 이해당사자(건물주와 세입자)에게 지급액의 지급사유 등을 설명하여 민원(마찰)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건 축 과	제목 : 가로정비수거물품 보관창고 신축공사 수의계약 건 위 공사를 (주)한성센트럴 (대표)권병찬과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준공함에 있어 타 견적을 받아 비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여 (주)한성센트럴의 견적만을 받아 수의계약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위와 같은 건이 재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모든 공사계약은 관계규정에 의거 적합한 계약을 체결하길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치 수 과	제목 :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하자검사 미이행 대림동 877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공사 준공후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러한 일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재 무 과	제목 : 계약보증금 징구 건 공사도급 계약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징구하고 (공사금액의 10%~20%) 또한 당초 계약이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계약보증서를 추가 징구하면서(추가금액의 10%)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에 따른 계약보증서를 추가 징수하지 않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증액되는 경우에만 계약보증서를 추가 징구하고 감액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서를 추가 징구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적인 업무처리로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시정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사회복지과	제목 : 청소년 독서실 현대화사업 조달구매상의 문제점 지방화시대에 책임 회피적인 획일화된 조달구매로 민간중소기업 육성이 저해되고 오히려 구매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는 현상이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일률적인 조달구매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입찰 등에 의거 구매·시공·용역 등을 제공받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사회복지과	제목 : 구립영이어린이집 영아(강민성) 사망사건 관련, 관리및 감독상 문제 현황 : 7개월만에 태어난 강민성(2002.2.24)을 부모 불화로 가출, 고모가 영이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상태에서 2002. 6. 19 15:00경 민성의 몸에서 열이나 보육교사가 고모에게 연락 16:00경 영등포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20:00경 어린이 집으로 귀원하였으나 6.20 08:00경이 되어도 일어나지 않아 확인한 바 사망확인 함. 문제점 : 7개월 밖에 되지 않은 미숙아를 가정사정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맡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며, 더욱이 사망당일 몸이 아파 병원에 치료받은 영아를 불과 5시간만에 다시 귀원시켰다는 것은 과실로 보며,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받은 아이를 다시 귀원시켰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 발견하였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며, 구청 또한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1. 7개월만에 태어나서 불과 4개월 밖에 안된 미숙아를 환자로서 병원에 입원시켜야지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대상이 아니므로 입·퇴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됨. 2. 어린이를 보육하는 자는 생명·신체를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바 낮에는 물론 밤에도 상시 최선의 근무자세를 견지하면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사전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3. 기 사망사건에 대하여는 적절한 손해배상등이 요구됨. 4. 구청 감독부서에서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지침보강등 사전·사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건설관리과	제목 : 대방북개천동 현장방문시 지적사항 내용 : 첨부물 참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시정조치를 바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랍.	

구의원 행정감사 지역순찰 지적사항

[건설관리과]

(순찰일시: 2002.11.29)

연번	구간	위치 및 상호	지적사항	비고
1	우신극장 → 신평역(4번 출구)	신길5동 253-41 주변 - 우아미가구 신길점 - 남상유리액자 - 가전가구보일러 - 두경오토바이 - 제일상사 - 가구마트	도로상 상품적치	
2	신평역4번출구 →보라매역 반대방향길	신평역3번출구 (한라산고기집앞)	포장마차 손수레 방치	
		신길5동 425-1 기사식당앞	차량출입시설(목재)	
		동신테니스장앞	차량출입시설(목재) 천막 가설물	
3	대방북개천 (신길동 방향)	신길동 410-6외 (169. 172. 170) 건축현장 관련	도로점용관계 컨테이너 설치 가로수 관계	
4		대림동 665-8 (국민은행 맞은편) _ 명성오토바이	도로상 적치	
5		대림동 778-35 주변 삼화목재 합판	도로상 상품적치	
6		대림3동 778-37 주변 - 대화상사 - 대호 카인테리어	도로상 상품적치 차량진출입시설(목재) 차량진출입시설(철재)	
7	도림천 북개도로	도림천북개도로 (대림운동장옆) (거주자 주차구간: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리)	중장비 부품적치 폐타이어 방치	
8		도림천 고가밑 - 구 재활용 센터 자리, (코오롱아파트 앞) - 코오롱(아)101동 앞	컨테이너 박스 차량노점상 (차량부품 판매) 노점상(옷 등)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사회복지과	제목 : 엄마어린이집(영등포병원옆 건물5층)시설 부적절 - 상기 민간 어린이집은 취학전 영·유아를 맡아 보살피는 시설로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나 유사시 용이한 탈출이 1층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 비상 탈출시 옆건물과 연결된 사다리(판넬)를 이용하도록 시설되어 영·유아에게는 부적절하고 안정성이 결여된 점. - 5층 바닥은 균열과 물이 고여 모기 등이 서식할 수 있으며 건물 주변에는 건축폐자재가 적치된 상태임. - 방에서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출입문은 주변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물건을 쌓아놓아 유사시 이용에 문제가 있음. - 또한 영·유아들에게 이용이 불편한 성인용 변기와 세면대가 시설되어 있고 지하에는 장례식장이 위치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행정지도를 통하여 적절한 위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그때까지 우선적으로 - 유사시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문제점으로 지적된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 5층 바닥의 보완과 건물주변에 적치된 폐자재를 치우도록 하여 환경이 개선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제목 : 등록말소된 자동차형 포장마차 건 대방천 복개 도로에 등록말소된 자동차형 포장마차 5대가 난립되어 인근지역의 교통장애 및 가로공원 나무가 고사중이며,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함으로 이용시민의 건강상 문제도 상존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건설관리과와 교통지도과가 서로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책임전가만 하지말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청소행정과	제목 : 살수 가로청소차량 운영 미흡 살수 가로청소차량의 노후와 운전원 부족으로 인하여 시간대별로 계획한 작업량을 이행하지 못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장비의 보완과 인력을 확보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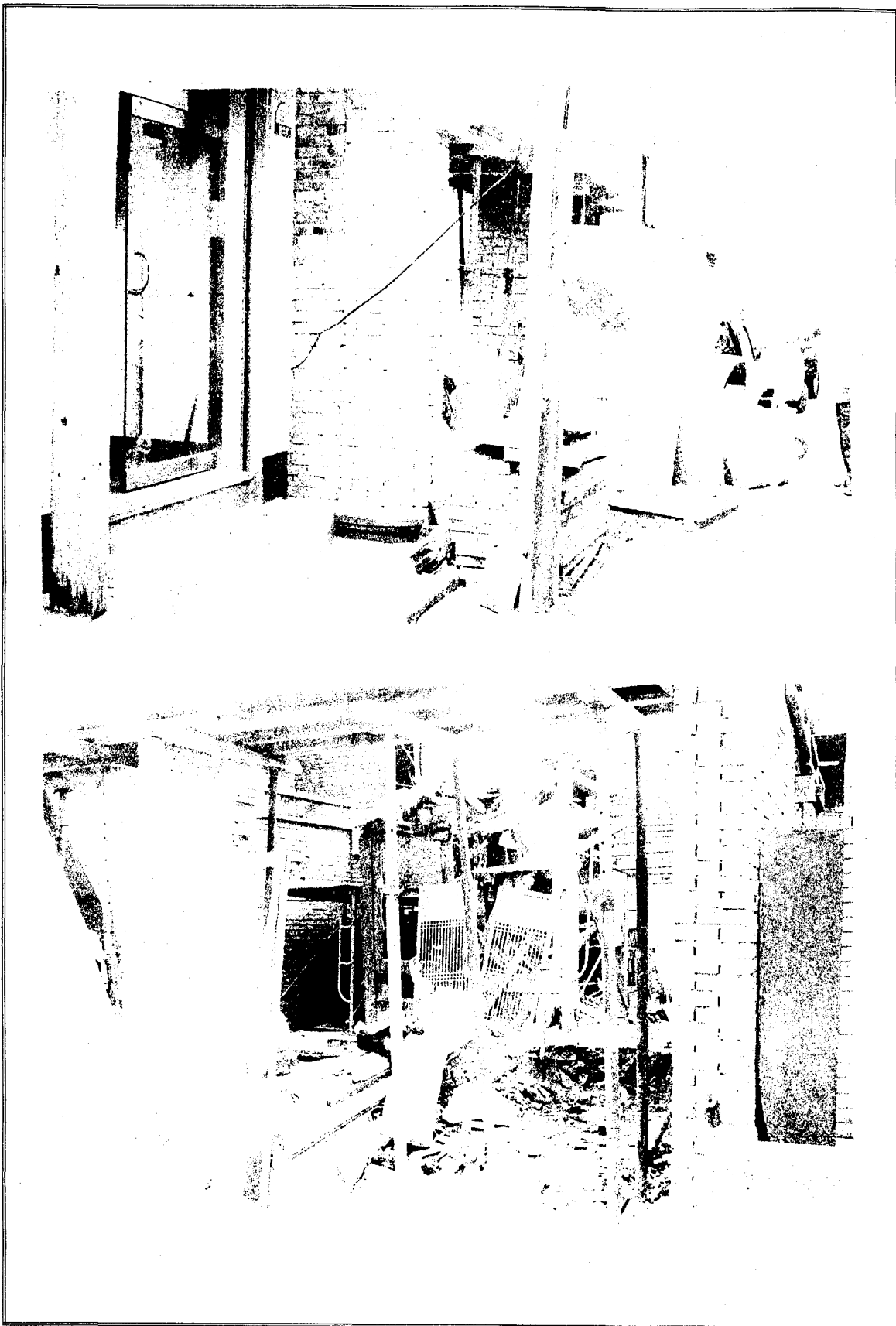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건 축 과	제목 : 무단용도변경 지도단속 소홀 양평동1가에 위치한 중앙장례식장이 1층과 3층을 의료시설(장례식장)로 용도변경허가 신청후 2001. 12. 31 사용승인(준공) 받았으나 현재 2층까지 무단용도변경하여 장례식장으로 시설한 후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장 확인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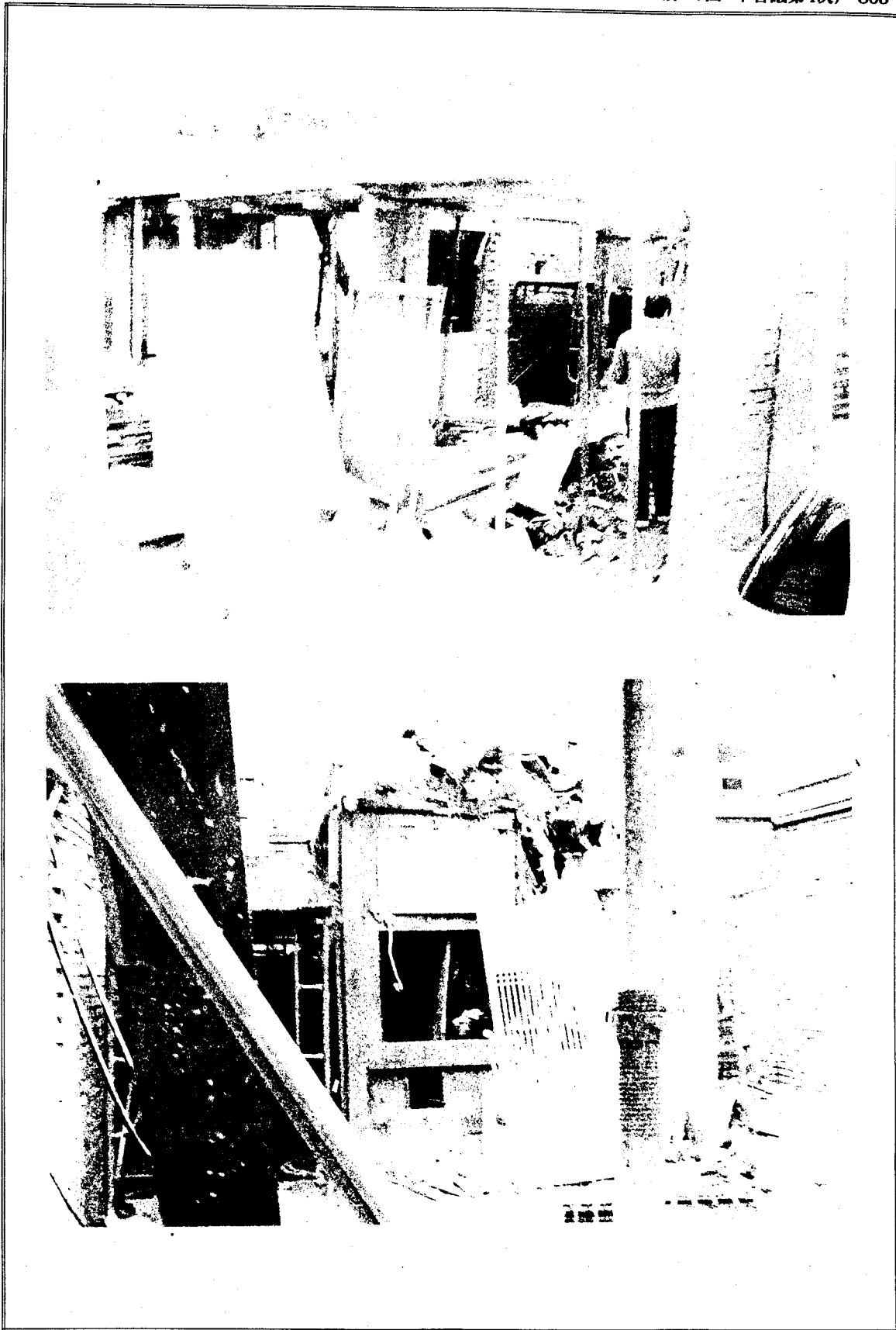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건설관리과	제목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보고서와 일일복명서의 단속지역, 단속대상 보고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 일일복명서의 단속원 명부에는 기능직만 기록되어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보고서와 일일복명서의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고 일일복명서에 담당직원도 단속업무현황을 기재토록 할 것.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건 축 과	제목 : 유희가 건물 무단증축 및 대수선 건 영등포구 당산동3가 314번지에 소재한 유희가 건물이 무단증축 및 대수선, 도로침범, 불법 용도변경 공사를 하고 있음 (현장사진 첨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침범 부분은 철거하고 신고를 득한후 공사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치 수 과	제목 : 치수과 준설토 운반 문제점 준설토 운반과정에서 현재 김포매립장에서만 계량을 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차후로는 영등포 계근소에서 1차 계근후 출발하여 김포매립지에서 2차 계근을 실시함으로써 계근의 투명성을 높이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사회복지과	제목 : 구립어린이집 간식비 정산과 관련 간이계산서 사용 구립어린이집 간식비 내용을 금전등록기의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고 간이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향후 간이계산서는 금전등록기에 의해 발행된 영수증을 첨부할 것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

대상기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교통지도과	제목 : 주택가 이면도로상 사업용차량 심야불법단속 건 2002. 1. 1 ~ 2002. 10. 31까지 총 46회에 걸쳐 택시승차거부 및 밤샘주차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실적은 사업용차량 41건만 단속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단속회수에 비교하여 단속실적(건수)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조금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향후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단속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